2023 SK에너지 행복나눔 난방비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

✔ SK에너지와 (재)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「SK에너지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」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✔ 관련 내용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 지원 개요 및 일정

□ 사업 목적

○ 2023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,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유를 지원해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

□ 대상 기준

<table>
<tr><th></th><th>사회복지시설</th><th>취약계층 가구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원물품</td><td colspan="2">SK에너지 주유상품권 5만원권</td></tr>
<tr><td>40장 (200만원) / 개소</td><td>6장 (30만원) / 가구</td></tr>
<tr><td>신청방법</td><td>시설 자체 신청</td><td>지자체 경유 신청 (개인 X)</td></tr>
<tr><td>지원개소</td><td colspan="2">예산 소진 시점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대상
기준</td><td>① 난방원</td><td>등유 사용(등유 포함한 혼합 난방원 사용 시 신청 가능)</td></tr>
<tr><td>② 시설조건</td><td>② 가구조건</td></tr>
<tr><td>1. 생활시설, 이용시설
2. 직접 복지서비스 수행 시설
(아동, 노인, 여성, 장애인, 청소년 등)
3. 미신고, 간접 수행 시설 제외</td><td>1. 증명서 발급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구, 조손가구
2. 위기구호 가구
- 다문화, 미혼모, 장애인, 재난·재해 저소득가정 등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③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1. '23년 상반기 난방유 지원 사업 수혜자
-「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지원」 및 「SK에너지 행복나눔 난방비 지원 사업」 지원 대상자
2. 유사 사업 수혜자
-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 등 정부 난방비 지원 사업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원 대상별 ①, ②, ③ <u>모두 충족</u> 시 지원 가능</td></tr>
</table>

□ 진행 일정

구 분	일 정	주요 내용
대상자 추천 및 접수	2023. 8. 23. ~ 9. 8.	- 지자체, 복지시설, 유관기관에서 발굴 및 추천 - 신청 접수(시스템 접수)
⇓		
대상 심사 및 선정	9. 11. ~ 10. 2.	- 대상자 선정 적격 심사
⇓		
대상자 발표	10. 4.	- 시설 및 가구 선정 - 홈페이지 게재, 담당자 SMS 및 메일 통지
⇓		
난방비 지원 상품권 지급 및 수령 확인	10. 4. ~ 10. 31.	- 주유 상품권 유가증권 발송 - 수령 확인 및 인수확인증 회신 - 부정 수급 방지 및 준수사항 안내 - 증빙 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 재공지
⇓		
결과 보고 취합 및 확인	~ 2024. 2. 29.	- SK에너지/엔크린 주유소 사용 점검 -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점검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 접수 방법

□ 신청서 접수

○ **접수 기간** : 2023. 8. 23.(수) ~ 9. 8.(금)

○ **접수 창구** : **자체 신청 홈페이지**(https://oil.koref.or.kr)

* **접수 시 기타 증빙 서류 첨부 필수, 기타 작성법 [붙임 2] 참조**

○ **접수 구분**

- **(시설)** 자체 신청
- **(가구)** 전국 지자체*에서 경유 신청(최대 20가구 / 재해·재난 5가구 이하)

* (지자체) 광역, 기초 지자체, 읍/면/동 각 개별 신청

ex) OO군 내 행정복지센터 5개소인 경우 군청 포함 6개소 * 20가구 = 120가구 추천 가능

□ 제출 서류

제출 방법	온라인 신청서 상의 “접수 정보/제출서류 업로드” 란에 사본 파일 첨부 (PDF, JPG, JPEG, PNG 파일만 첨부 가능)
구 분	제출 서류
사회복지 시설	- 시설신고증, 시설 고유(사업자)등록증 각 1부

시설신고증		고유(사업자)등록증	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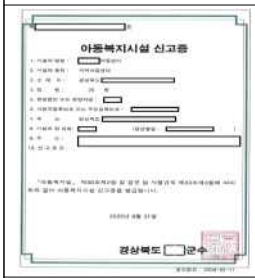			

- 시설신고증, 고유(사업자)등록증 상의 정보가 신청서상의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, 불일치 시 선정 탈락

취약계층 가구

-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서명본 1부 [별첨 1]
- (일반취약) 취약계층 가구 증명서 1부
- (위기구호) 위기구호 대상자 확인서 1부 [붙임 4]

차상위계층	한부모 가족	조손가구	위기구호가구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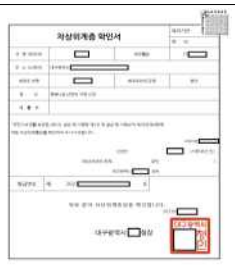		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	

유의사항

일반 취약계층 가구 (제출서류) 취약계층 가구 증명서 1부 +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- 취약계층 가구 증빙은 “수급자”, “차상위”, “한부모” 등 취약계층 관련 용어를 포함한 공문서 일체 예 차상위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증명
- 기초생활보장 급여(생계/주거/의료/교육) 수급자 중 한국에너지공단 “에너지바우처” 등 정부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

위기구호 가구 관련 (제출서류) 위기구호 대상자 확인서 1부 +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- **“위기구호 가구”**는 공문서를 통한 증빙이 불가하나 난방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가구로서 지자체 추천을 통해 지원
  * 재난·재해 가구는 전체 20가구 중 5가구 이하 추천 가능
- 위기구호 가구 확인서는 추천 지자체의 직인을 포함해야 함

3 상품권 사용 및 결과보고 절차

□ 유류상품권 발송 및 사용

○ **대상자 선정** : 2023. 9. 11. ~ 10. 2.

- 예산 부족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
  (1순위) 지역 균형 **(2순위)** 취약계층 가구 **(3순위)** 위기구호 가구

○ **대상자 발표** : 2023. 10. 4. (예정)

○ **상품권 발송** (발표일부터 순차 발송)

- **(시설)** 신청서 내 시설 주소로 등기 발송
- **(가구)** 경유 신청한 지자체 담당자 주소로 등기 발송

※ 상품권 수령 후 접수 홈페이지 통한 **인수확인증 제출 필수**

○ **상품권 배부 및 사용**

- **(시설)** 인수확인증 제출 후 사용
- **(가구)** 인수확인증 (추천 지자체의 인수 확인) 제출 후 지자체 담당자가 유류비 **대리 결제**

  * 상품권 가구에 직접 지급 불가하며, 배송 방식 등 주유소 사전 협의 권장

□ 상품권 사용 결과보고

○ 결과보고서 양식(별첨 2) 작성하여 접수 홈페이지 통해 제출

○ **영수증 (지출 내역 전체)** 및 사진 (1장 이상) 첨부 필수

※ SK에너지/엔크린 주유소의 '실내용 등유' 구매한 전자영수증만 인정, 증빙 불가한 경우 유가증권 반납/환수 조치

(증빙 불가) - 현대오일뱅크 등 타 주유소 영수증
- 휘발유/경유 등 타 유종 결제
- 간이수기영수증/선불권 등 비전자영수증

4 유의 사항

○ **가구는 지자체* 경유**하여 신청 접수

* **(지자체)** 선정 후 유류 지급·결과보고서 작성 등 수행

○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은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에서 지원함

○ **SK에너지/엔크린 주유소*에서 등유 구매 어려울 시 지원 불가**

* **(지원 유무)** 주유소 또는 자체 배달로 주유 가능해야 지원

○ **유사 사업*의 수혜 대상**이거나 예정일 경우 **선정에서 제외**

*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 등 정부 난방비 지원 사업 및
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긴급 지원 하반기 사업

5 문의

○ (재)한국에너지재단 ☎ 02-6913-2132, 2135, 2123, 2145, 2165

붙임1 주유소 검색 안내

https://www.opinet.co.kr 접속 후
"싼 주유소 찾기" → "지역별"을 클릭

지역 설정 후 상표는 **"SK에너지"**만 체크
품목은 **"실내등유"**로 하여 주유소 확인

검색되는 주유소 위치 확인 후 전화하여
배달 가능, 등유 취급 여부 확인

해당 지역에 없을 시 근처로 범위를 바꾸어
재검색 후 여부 확인
(배달 불가, 등유 미취급 시 지원 불가)

붙임2 신청서 작성 방법

□ 신청서 작성 방법

○ 복지시설

지원 신청서	주소	- 상품권 수령 가능 주소
	담당자명 휴대전화	- 작성 필수(선정발표 시 문자 발송 등) - 사업 진행 중, 담당자 변경 시 고지 必 * 등기 발송으로 담당자 부재 시 상품권 수령 불가
	사용처	- 난방유 구매 예정 **"SK에너지/엔크린 주유소명"** 기재 * 배달 가능, 등유 취급 여부 등을 지원 전 사전확인 요망 * 주유소 검색은 **붙임1 참고** (https://www.opinet.co.kr)

○ 가구

지원 신청서 (기본사항)	주소	- 지원받을 가구 주소
	가족사항	-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 수 기재(총 인원수)
지원 신청서 (추천 지자체)	주소	- 상품권 수령 가능 주소
	담당자명 휴대전화	- 작성 필수(선정발표 시 문자 발송 등) - 사업 진행 중, 담당자 변경 시 고지 必 * 등기 발송으로 담당자 부재 시 상품권 수령 불가
	사용처	- 난방유 구매 예정 **"SK에너지/엔크린 주유소명"** 기재 * 배달 가능, 등유 취급 여부 등을 지원 전 사전확인 필수 * 주유소 검색은 **붙임1 참고** (https://www.opinet.co.kr)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작성 요령	- 지원받을 가구 대상자 작성

붙임3 접수 및 선정 현황 확인 방법

□ 접수 방법

1		2		3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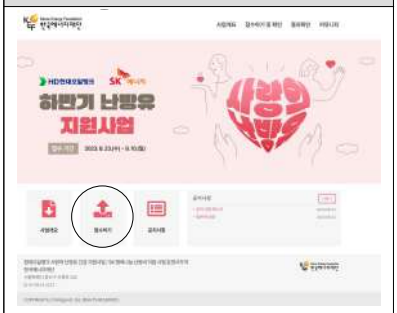	→		→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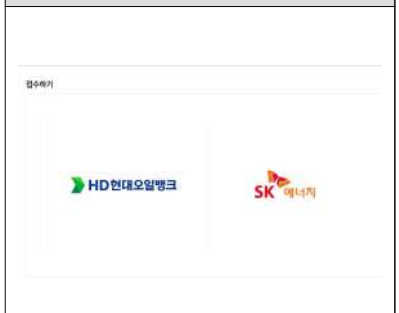
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“접수하기” 메뉴 클릭		개인정보 이용 동의 진행		신청 후원사 선택

4		5		6
	→		→	
접수 정보 입력 ※ [붙임 2] 참조		추가 증빙 서류 제출 ※ 3p 참조		접수 확인증 확인

□ 선정 현황 확인 방법

1		2		3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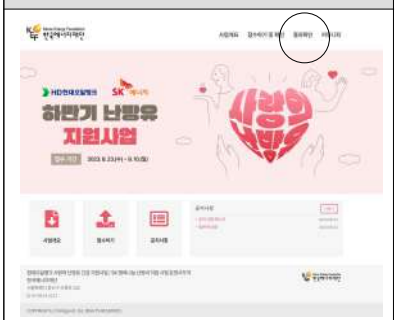	→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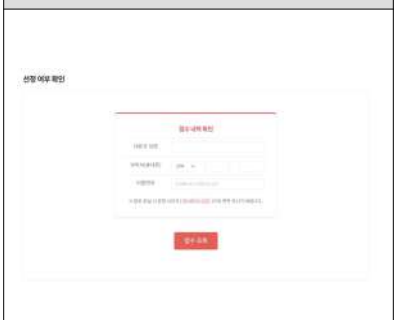	→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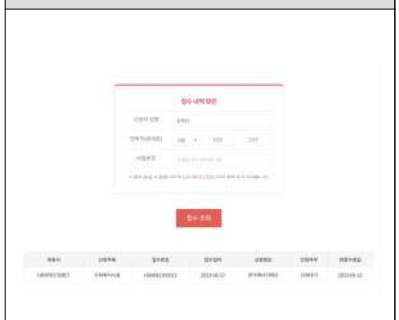
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“결과 확인” 메뉴 클릭		접수 확인증 상의 정보 입력		선정 현황 확인

붙임4 지자체 위기구호 대상자 확인서

위기구호 대상자 확인서

성 명	홍길동			생년월일(성별)		yyyy. mm. dd. (남/여)		
구분	☐	독거가정	☐	장애인가정	☐	조손가정	☐	다문화가정
	☐	미혼모가정	☐	저소득가정	☐	재난재해가정	☐	기타 해당 내용 기재
주 소	우) 04317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2길 71 101호							
연 락 처	010-0000-0000							

상기 대상자는 공공·민간 에너지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로 「SK에너지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」이 필요한 위기 구호 대상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월 일

확인 기관명: 000 행정복지센터 (직인)

기관 담당자: 000 (인 또는 서명)

(재)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

※ 위 확인서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붙임5 사회복지시설 범위 및 개념

사회복지사업의 범위 (근거 :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)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 법령*에 의한 "보호·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"과 "사회복지상담·직업지원·무료숙박·지역사회복지·의료복지·재가 복지·사회복지관 운영·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"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"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"을 말함

*** 개별 법령**

①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②「아동복지법」 ③「노인복지법」 ④「장애인복지법」
⑤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⑥「영유아보육법」 ⑦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⑧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⑨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⑩「입양특례법」
⑪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⑫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⑬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
⑭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⑮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⑯「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⑰「의료급여법」 ⑱「기초연금법」 ⑲「긴급복지지원법」
⑳「다문화 가족 지원법」 ㉑「장애인연금법」 ㉒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㉓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㉔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㉕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㉖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㉗「청소년 복지지원법」 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*

***「건강가정기본법」,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,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**

§ 법제처 해석(15-0247,'15.6.23)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

소관부처	시설종류	세부종류		관련법
		생활시설	이용시설	
보건복지부	노인복지시설	ㅇ 노인주거복지시설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ㅇ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ㅇ 재가노인복지시설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ㅇ 노인보호전문기관 ㅇ 노인일자리지원기관	「노인복지법」
	복합노인복지시설	ㅇ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가능		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	아동복지시설	ㅇ 아동양육시설 ㅇ 아동일시보호시설 ㅇ 아동보호치료시설 ㅇ 자립지원시설 ㅇ 공동생활가정	ㅇ 아동상담소 ㅇ 아동전용시설 ㅇ 지역아동센터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ㅇ 가정위탁지원센터	「아동복지법」
	장애인복지시설	ㅇ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ㅇ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ㅇ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ㅇ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ㅇ 장애인공동생활가정 ㅇ 피해장애인쉼터	ㅇ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의료재활시설 ㅇ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	「장애인복지법」
	어린이집		ㅇ 어린이집	「영유아보육법」
	정신보건시설	ㅇ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	ㅇ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	노숙인시설	ㅇ 노숙인자활시설 ㅇ 노숙인재활시설 ㅇ 노숙인요양시설	ㅇ 노숙인종합지원센터 ㅇ 노숙인일시보호시설 ㅇ 노숙인급식시설 ㅇ 노숙인치료시설 ㅇ 쪽방상담소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	사회복지관 결핵·한센시설	ㅇ 결핵·한센시설	ㅇ 사회복지관	「사회복지사업법」
	지역자활센터		ㅇ 지역자활센터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	다함께돌봄센터		ㅇ 다함께돌봄센터	「아동복지법」
여성가족부	성매매피해지원시설	ㅇ 일반지원시설 ㅇ 청소년지원시설 ㅇ 외국인지원시설 ㅇ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	ㅇ 자활지원센터 ㅇ 성매매피해상담소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성폭력피해보호시설	ㅇ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	ㅇ 성폭력피해상담소	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가정폭력보호시설	ㅇ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	ㅇ 가정폭력상담소 ㅇ 긴급전화센터	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한부모가족복지시설	ㅇ 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 ㅇ 부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 ㅇ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) ㅇ 일시지원복지시설	ㅇ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	다문화가족지원센터		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	건강가정지원센터		ㅇ 건강가정지원센터	「건강가정기본법」
	청소년복지시설	ㅇ 청소년쉼터 ㅇ 청소년자립지원관 ㅇ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	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※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여성회관,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

[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]

대상자별	형태	시설 종류		소관부서	관련법령
노인	생활	ㅇ 의료	· 노인요양시설	요양보험운영과	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
			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	
		ㅇ 주거	· 양로시설, 노인 공동생활가정	노인정책과	
			· 노인복지주택		
		ㅇ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		
	이용	ㅇ 재가	·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목욕, 재가노인지원, 방문간호)	요양보험운영과	
		ㅇ 여가	· 노인복지관	노인지원과	
			· 경로당, 노인교실		
		ㅇ 노인보호전문기관		노인정책과	
		ㅇ 노인일자리지원기관		노인지원과	
아동	생활	ㅇ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		아동권리과	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
		ㅇ 아동일시보호시설			
		ㅇ 아동보호치료시설			
		ㅇ 자립지원시설			
		ㅇ 공동생활가정(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)		아동학대대응과	
	이용	ㅇ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		아동권리과	
		ㅇ 지역아동센터		인구정책총괄과	
		ㅇ 아동보호전문기관		아동학대대응과	
		ㅇ 다함께돌봄센터		인구정책총괄과	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장애인	생활	ㅇ 생활시설	· 장애유형별 거주시설	장애인권익지원과	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
			· 중증장애인 거주시설		
			· 장애영유아 거주시설		
			· 장애인단기 거주시설		
			· 장애인공동생활가정		
			· 피해장애인쉼터		
	이용	ㅇ 지역사회 재활시설	· 장애인복지관		
			· 장애인주간보호시설		
			·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수련시설,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		
			· 수어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		
		ㅇ 장애인의료재활시설		장애인정책과	
		ㅇ 직업재활 시설	· 장애인보호작업장, 장애인근로사업장,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	장애인자립기반과	
		ㅇ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			
영유아	이용	ㅇ 어린이집	국공립, 법인, 직장, 가정, 부모협동, 민간	보육기반과	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
정신 질환자	생활	ㅇ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		정신건강정책과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6조
	이용	ㅇ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			
노숙인 등	생활	ㅇ 노숙인자활시설 ㅇ 노숙인재활시설 ㅇ 노숙인요양시설		자립지원과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	이용	ㅇ 노숙인종합지원센터 ㅇ 노숙인일시보호시설 ㅇ 노숙인급식시설 ㅇ 노숙인진료시설 ㅇ 쪽방상담소			
지역주민	이용	ㅇ 사회복지관		사회서비스자원과	「사회복지사업법」
기타시설	복합	ㅇ 결핵·한센시설		질병관리본부 (결핵·에이즈 관리과)	「사회복지사업법」
	이용	ㅇ 지역자활센터		자립지원과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